

[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승강기 법정검사]

채용분야	기술	분류 체계	대분류	15. 기계
			중분류	05. 기계장치설치
			소분류	01. 기계장비설치·정비
			세분류	승강기 법정검사 (공단 자체개발)
공단 주요사업	○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, 인증, 진단컨설팅, 안전성 평가,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			
핵심책무 (능력단위)	○ 승강기 법정검사(완성·정기·수시·정밀안전 검사) 실시			
직무수행내용	○ (승강기 법정검사)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완성검사, 정기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,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,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, 검사준비,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,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			
일반요건	연령	공고문 참조		
	성별	무관		
교육요건	학력	무관		
	전공	승강기, 기계, 전기·전자학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		
필요지식	○ (승강기 법정검사)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준의 이해, 검사 유형(완성, 정기, 수시, 정밀안전)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, 승강기 시설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덤웨이터 등)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,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, 승강기 설치도면(전기, 기계) 해석, 승강기 조작 매뉴얼, 승강기 이용자 준수 사항, 검사 측정장비 종류 및 사용 매뉴얼 등			
필요기술	○ (승강기 법정검사)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 능력,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 능력, 검사정보시스템(전산) 사용 능력, 기계실승강로승강장피트 등 구조과역 및 검사능력, 승강기 설치도면(전기·기계) 해석 능력, 검사 측정 장비 사용 능력,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			
직무수행태도	○ (승강기 법정검사) 승강기 검사기준 및 매뉴얼을 준수하는 태도, 공정한 태도,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(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),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(협착점, 끼임점, 물림점 등) 주의			
필요자격	○ (주요자격) 승강기 기사, 승강기 산업기사, 승강기 기능사 ○ (보조자격) 기계, 전기, 전자, 안전 관련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			
직업기초능력	○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			
참고사이트	○ www.ncs.go.kr 홈페이지 → NCS·학습모듈 검색			

우대사항

※ 가산점수는 필기전형에 한하여 적용(최대 10% 부여)

□ 법정 가산

<1> 국가보훈 대상자(5% 또는 10%)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※ 우대 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시고

추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(허위로 판명될 경우 득점 순위와 관계없이 합격 취소)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
나.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
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

나.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취업지원)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.

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순국선열의 유족

2.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
 3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. 이 경우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- 가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
 - 나.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 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- 가. 애국지사의 가족
 - 나.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 - 다.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제22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- 가.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
 - 나.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 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- 가.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
 - 나.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* 장애등급 11급
- 다. 삭제
-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4조(채용시험의 가점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- 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
 - 나.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
가.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

나.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* 상이등급 6급

-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7조의9(취업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.

1.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

3.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
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: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: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<2> 장애인(5%)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※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을 2배(10%)로 적용

[붙임 3] 검사자 자격기준

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(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) 별표 7의3

구분	자 격 기 준
검사인력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(이하 "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 "이라 한다)이 1년 이상 인 사람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·전기·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·전기·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인 사람

[붙임 4] 검사보조자 자격기준

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(승강기의 자체점검자) 제1항제1호부터 제9호

구분	자 격 기 준
자체점검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(이하 "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 "이라 한다)이 2개월 이상 인 사람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 인 사람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·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 인 사람 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·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인 사람 6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학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 인 사람 7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학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8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학과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 인 사람 9. 승강기의 설계·제조·설치·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

<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해석 관련[승강기안전과-1371(2018.5.23.)]>
 "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"은 승강기 관련 학위 또는 승강기 자격증 **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**